

#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안내

## 실업에 따른 생계비 보조지급, 이직사유합당해야

### [1] 고용보험 적용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본사와 각각의 건설현장별로 분리적용된다.

#### 가] 본사

본사의 인원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 건설현장과는 별도로 가입한다.

- ① 30인 이상 : 실업급여
- ② 70인 이상 :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 ③ 상시근로자 대상인원 : 본사 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소장, 총무 등의 인원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나] 건설현장

##### (1) 고용보험대상현장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현장별로 개별 적용하며 적용대상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동 고시금액 이상 공사인 경우는 고용보험료 전부(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를 부담한다.

- '96년도 고시금액(노동부 고시 95-54호) : 총공사금액 40억 원 미만공사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

##### (2) 하도급공사인 경우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고용보험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하도급자가 고용보험법상의 주체가 되는 경우와 원도급자가 고용보험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① 하도급자가 고용보험법상의 주체가 되는 경우(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고용보험법상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가 보험관계 소멸신고, 피보험자자격(취득, 상실)신고, 개산·확정보험료 보고·납부를 해야 한다.

② 원도급자가 고용보험법상의 주체가 되는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고용보험법상의 주체가 되며, 하도급자는 피보험자격(취득, 상실)을 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 실업급여부분중 피보험자(근로자)부분을 공제하여 원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실업급여부분중 사업부 부분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부분은 원도급자와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기계장비의 조립, 설치 등 생산제품의 설치를 하는 공사(예: 보일러 설치공사, 수처리 장비 설치공사 등)는 「고용보험적용 및 사업장관리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제조업에 포함되므로 현장 단위별로 고용보험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 [2] 고용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 가] 보험료율

- ① 실업급여 : 0.6%(노·사 각 1/2씩 부담)
- ② 고용안정사업 : 0.2%(사업주 부담)
- ③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0.1% (사업주 부담)

- 150인 이상 기업 : 0.3% (사업주 부담)
- 대기업 : 0.5%(사업주 부담)
- 직업훈련대상기업 : 0.05%(사업주 부담)

**나] 보험료 산정**

**(1) 보험요율의 적용**

보험료 산정은 피보험자의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산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건설공사와 같이 임금총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총공사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본다.

**(2) 실업급여부분**

고용보험료중 실업급여부분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대상자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상용근로자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일용근로자의 정의(고용보험법 제8조제3항) : 일일고용되는 자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3)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단, 60세 이후에 고용된 자,

파트타임 근로자는 제외한다.

**다] 보험료의 납부방법**

산재보험료와 동일하게 사업주가 매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한 뒤 익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보고, 정산(개산보험료를 분기별로 분납도 가능)한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매월 임금지급시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경우에는 매년 1월말까지 사업내 직업훈련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훈련비용을 보험료에서 사전공제한다.

**[3]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업가]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직촉진수당은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로 구분된다.

**(1) 기본급여의 수급조건**

실업에 따른 생계비 보조의 지급으로 기본급여를 피보험자가 수령하려면 아래의 수급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조건]**

① 이직사유가 합당할 것(자발적 실업이 아닐 것)

다음과 같이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예시) 즉, 현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공사현장의 중

료에 따라 실직된 경우, 당초 채용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임금체불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직·간접적으로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형식상으로만 임의퇴직인 경우 등은 수급조건에 해당한다. 단,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되는 경우는 기본급여 지급을 제외한다.

**② 일정기간의 피보험기간의 충족**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건설현장에 고용된 상용근로자는 공사현장이 소멸되면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나, 다른 현장에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되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위 경우에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상용근로자가 기본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피보험기간을 산정한다.

**③ 실업신고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기본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2) 기본급여수준**

실질적 급여기초금일액의 50%(단, 35,000원 이상 지급불가능)

(3) 실업급여 지급기간

구 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5세 미만	30일	60일	90일	120일
25세 이상 30세 미만	60일	90일	120일	15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자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주기: 나이구분은 이직일 당시 연령임

**나]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조정지원사업, 유희인력고용촉진사업, 고용촉진시설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1) 고용조정지원사업 내용

① 휴업수당지원금

경제상의 이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한다.

② 전직훈련지원금

사업주가 이직이 불가피하게 근로자에게 전직훈련을 실시한 경우, 1년을 한도로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액의 1/3(중소기업은 1/2)과 전직훈련비용을 지원한다.

③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정기간내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재배치한 경우, 1년을 한도로 재배치된 근로자의 임금액의 1/3(중소기업은 1/2)을 지급한다.

- 재배치 근로자가 잔류근로

자의 수가 종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유지할 것.

-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행하여진 경우.

**다]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사업내 직업훈련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사전에 훈련계획서를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교육훈련 등 지원금의 지급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한다.

③ 직업훈련시설 설치 지원 :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4] 고용 보험 가입 절차**

고용보험 가입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경우, 본사와 건설현장을 구분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가] 본사인 경우**

보험가입 사유 발생일 14일 이내에 본사 소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피보험자자격 취

득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인 경우**

(1) 원도급공사

원도급공사금액이 40억 이상인 경우(설계변경에 의하여 40억이 초과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당해 현장 지방노동관서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2) 하도급공사인 경우

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고용보험법의 의무와 권리를 승계한 경우, 하도급공사인 경우라도 원도급공사와 동일하게 하도급자가 고용보험법상의 절차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가 고용보험법에 가입한 경우

원도급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원도급자가 고용보험법에 가입한 경우에는 하도급자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면된다. [공단본부 : (02)6700-300]